

**News**

## LG생명과학 성장호르몬 제조기술 유럽특허 획득

LG생명과학(대표 양홍준)은 한번 투약으로 효과가 1주일간 지속되는 '서방출성(徐放出性) 인간성장 호르몬' 제조기술에 대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22개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이 기술을 왜소증 치료제에 적용할 경우 체내에서 약물의 용해와 흡수가 조절됨으로써 기존에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1주일에 한번만 주사를 맞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앞으로 2018년까지 유럽특허청 관할 22개 국가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단백질 약물의 제조 판매에 대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LG생명과학은 이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성장호르몬제품 개발을 위해 최근 스위스의 바이오파트너스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현재 임상2상을 실시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기술은 성장호르몬 외에도 인터페론과 인슐린, 백혈구 생성 촉진인자 등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기프코닷컴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방법 특허

특판 전문 B2B업체인 기프코닷컴(대표 김영진)은 상품 카탈로그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방법(특허 제0363683호)'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기프코닷컴(<http://www.gifko.com>) 측은 이 특허를 활용하면 공급사 및 판매사가 구매사에 상품을 제안할 때 카탈로그 제작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상품 정보의 변경이 가능해 개별화된 카탈로그 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현재 기프코닷컴의 e마켓 플레이스 내 '아이템 박스'를 통해 회원사에 무료로 제공된다.

## 휴렛팩커드 바이러스 퇴치 신기술 개발

휴렛팩커드(HP)가 인체의 면역체계 작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HP의 매트 윌리엄슨 박사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바이러스 압살(Virus Throttling)' 체계를 개발 중"이라며 "이는 개인용 컴퓨터가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컴퓨터에 연결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분에 최대 400대까지나 연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신기술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 체계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덧붙이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올 때까지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HP는 기업체의 대규모 컴퓨터 등에 설치하기 쉬운 이 바이러스 퇴치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했으나 생산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HP는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를 포함해 새로운 제품 연구개발(R&D)에 연간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웹특허 침해 소송 오는 7월 열려

한 벤처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우리의 웹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심리가 오는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은 신생기업 에올라스(Eolas)가 지난 99년 2월 MS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내년 7월 8일 북일리노이아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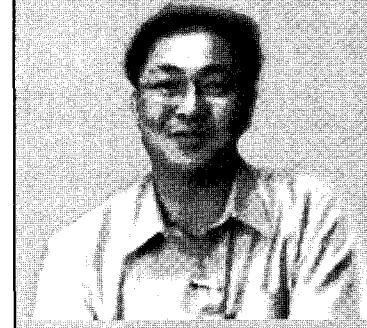
マイ클 D 도일 캘리포니아 교수 등이 만든 연구개발전문업체 에올라스는 당시 "MS의 원도95이래 원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가 우리가 개발, 98년 특허를 제출한 웹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냈었다.

이 회사는 특허를 침해한 MS 제품에 대해 무기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 대변인 짐 테슬러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가진 업체로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도 존중한다. 결코 에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역동적으로 웹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액티브X'라고 불리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기고문**

### 쉽게 알아보는 국제출원요령



백 건 수 (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mailto: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명세서는 자신이 개발한 발명의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고, 도면을 차근히 설명하는 형식이 기본이다.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세서 기재 자체가 잘못되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애써 개발한 발명이 명세서 기재가 잘못되어 거절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여야 한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에서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필자의 특허사무소에 대출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는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므로 개인 발명가가 변리사의 도움없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미 출원된 명세서를 찾아 참고하면 편하다.

이러한 참고 기술을 선행기술이라고 하는데, 선행기술은 인터넷 사이트([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 가입 및 검색비는 무료다. 검색 방식으로는 자신의 발명에 관련된 주요 단어를 입력시켜 검색하여야 하고,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면 좀 더 세부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야 한다.

둘째, 명세서 작성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인 발명가가 변리사 도움없이 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심사관이 특혜를 주지 않는다. 특허권이 등록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만이 당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작성자 및 출원인의 정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도면 작성이 잘되어야 한다. 도면 작성은 특별한 도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으면 된다. 도면이 작성되면 도면에 도시된 각 구성 부분마다 번호를 붙인다. 번호 붙이는 방식도 자유롭다.

넷째, 도면을 작성하면서 상품화하지는 않더라도 방어적으로 상상되는 기술을 찾아내어 도면 작업에 추가시킨다. 현행 특허법상 일단 출원된 발명에 추가적인 발명을 더 넣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시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므로 한 번 출원을 할 때 모든 기술 내용을 총망라하여 작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다섯째, 도면에서 만든 번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해 나간다.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전부 설명한다.

여섯째, 상세한 설명란에서 설명된 부분 중, 자신이 진정으로 개발한 발명 부분만을 특허청구범위에 적는다. 특허청구범위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끝맺는 동사가 없어야 하며,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품'식으로 문장의 끝맺음을 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상세한 설명란에 기재된 부분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부분을 의미한다. 특허청구범위는 넓게 권리가 형성되도록 작성함이 원칙이나, 간단한 발명인 경우에는 발명한 그대로만 권리화 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는 자신이 개발한 부분만에 대해서 넓게 작성하는 것인지, 개발하지 않은 부분까지 넓게 작성하면 오히려 거절 사유가 된다.

명세서 자체는 집을 한 채 짓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좋은 특허권이 되려면 좋은 명세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 한국 특허출원 세계 3위

우리 나라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 부문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특허청이 발표한 출원통계를 바탕으로 출원 다순위 국가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14만5,416건으로 일본(44만7,981건)과 미국(32만4,21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0년 출원건 13만9,173건 대비 4.5% 증가한 것이며

IMF 시기인 98년 10만4,084건에 비해서는 무려 40%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꾸준한 증가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의 권리화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전체 산업체재산권 출원건수부문에서는 지난해 28만9,420건이 출원돼 일본(61만1,159건), 미국(57만5,786건), 중국(47만3,990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